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64 발의연월일: 2024. 9. 25.

발 의 자 : 민홍철・임미애・윤준병

한준호 · 김준혁 · 허성무

손명수 · 김정호 · 곽상언

전재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시·군법원에는 합의부를 둘 수 없고, 시·군법원의 관할은 「소액사건심판법」을 적용받는 민사사건, 화해·독촉 및 조정(調停)에 관한 사건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됨. 그 결과 시·군법원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민사사건, 가사사건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중요 사법서비스를 향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에 시·군법원에서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합의부가 설치된 시·군법원의 민사 및 가사 사건에 관한 관할을 확대함으로써 시·군법원 소재지 거주자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5항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

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26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항 중 "가정지원"을 "가정지원 및 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합의부가 설치된 시·군법원(이하 "합의부 설치 시·군법원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4조의2(합의부 설치 시·군법원의 관할 등) ① 합의부 설치 시·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할한다.
 - 1. 지방법원이 심판하는 민사사건
 - 2.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
 - 3. 가정법원이 심판하는 가사사건
 - ② 합의부 설치 시·군법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.
 - 1.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
 - 2.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
 - 3. 시 · 군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· 기피사건
 - 4. 다른 법률에 따라 시·군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합의부 설치 시·군법원의 관할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첫 체	개 정 안
현 행 	개 정 안
제7조(심판권의 행사) ① ~ ④	제7조(심판권의 행사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⑤ 지방법원·가정법원·회생	⑤
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	
의 지원, <u>가정지원</u> 에서 합의심	<u>가정지원 및 「각급 법</u>
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	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
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	법률」 제3조에 따라 합의부가
심판권을 행사한다.	설치된 시・군법원(이하"합의
	<u>부 설치 시·군법원"이라 한</u>
	<u>다)</u>
<u><신 설></u>	제34조의2(합의부 설치 시・군법
	원의 관할 등) ① 합의부 설치
	시・군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
	건을 관할한다.
	1. 지방법원이 심판하는 민사사
	<u>건</u>
	<u>2.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</u>
	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
	3. 가정법원이 심판하는 가사사
	<u>건</u>
	② 합의부 설치 시・군법원의
	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
	<u>으로 심판한다.</u>

- 1.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

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
- 2.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사건
- 3. 시·군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<u>·기피사건</u>
- 4. 다른 법률에 따라 시・군법

 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

 사건